

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알림

- ◆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
- ◆ “장애인전용주차구역”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보행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여객시설 등 이용 시 편의 보장

□ 점검기간 : 19. 11. 11. (월) ~ 12. 10. (화) 1개월 간

□ 점검대상 : 관내 공공시설,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

□ 점검사항 :

-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
-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
- 주차불가표지(사각형 표지)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
-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
-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
- 주차표지의 위반조 및 표지 불법 대여
-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

**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
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**

아래 표지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

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

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

본인 운전용	보호자운전용
	
	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!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!

과태료
10만원!
50만원!

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**‘주차가능’**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사항 : 북평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☎560-2678